

국가표준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병 민*

목 차

1. 국가표준의 개념 및 내용
 - 가. 국가표준의 개념
 - 나. 국내외 환경 변화
2. 국가표준기본법 및 기본계획 추진경과
 - 가. 국가표준기본법 관련 법령 제정 · 시행
 - 나.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3. 국가표준기본법 체계 현황 및 문제점
 - 가. 국가표준기본법 체계의 구조 및 특징
 - 나. 현황 및 문제점
4. 국가표준관련 법령 및 체계의 개선방안
 - 가. 시행령 개정 방안
 - 나. 바람직한 국가표준 역할분담 체계
 - 다. 관련 법령 개정의 방법론
 - 라. 현황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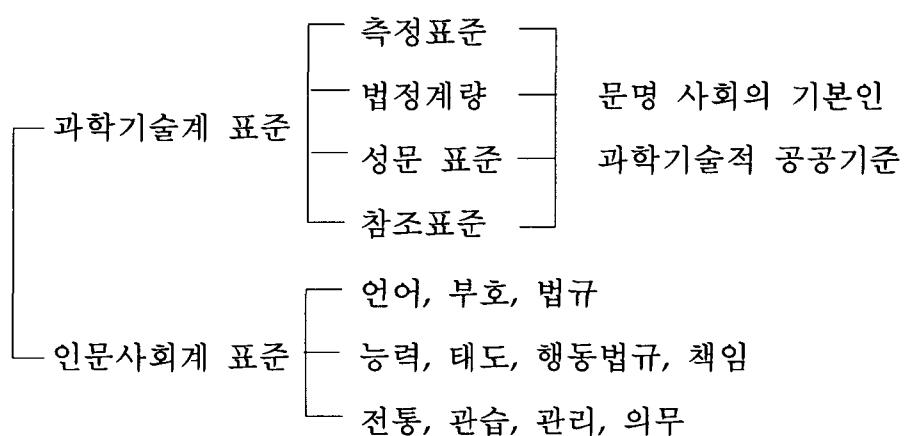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사정책그룹장

1. 국가표준의 개념 및 내용

가. 국가표준의 개념

(1) 국가표준의 종류

- 표준(Standard) : 문명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준용해야 할 객관적 기준



- 일반적으로는 측정표준을 표준이라 호칭하고 성문표준은 산업표준을 말하며 표준화라고 호칭하고 있음
- 국가표준의 구분
 - 측정표준 : 국제단위계(SI)를 바탕으로하여 측정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
 - 법정계량 : 상거래, 교역등에 법령으로 통용되는 강제성을 지닌 계량기준
 - 산업표준 : 산업규격(KS)에 의한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는 품질보증 표준
 - 참조표준 : 각 표준의 응용 및 활용을 위한 자료 및 물질

(2) 측정표준 현황

-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13조에 의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측정표준을 주관하는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이 되었으며 분야수와 정밀정확도가 확대되고 있음
- 측정분야 283개중 157개분야 확립 (현재 선진국 초기 수준임)
 - 측정표준분야 : 122개 분야중 89개분야 확립

- 시험분야 : 161개 분야중 68개분야 확립

나. 국내외 환경 변화

(1) 경제·사회 동향

세계적으로는 동서간 냉전이 종결되고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일되어 무역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블록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표준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 WTO 체제하에서 국가간 혹은 지역간 협력 요구
- 표준관련 MRA(다자간 상호인정협약)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
 - 무역상 기술장벽의 해소방안으로 추진
 - 세계 교역량의 80 %가 표준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유럽연합과의 상품거래 시 50 %가 강제규격에 대한 인증 대상
 - 국내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오사카 행동지침”에 따라 APEC 회원국가의 규격을 분야별로 2005~2010년까지 세계규격에 일치시키도록 함
- 측정표준 분야의 지역 내 협력은 APMP(아시아·태평양 계측학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추진

(2) 제도 및 정책 동향

- 국가표준기본법 및 시행령
 - 1980년에 국가표준제도에 대한 헌법조항이 신설되었고,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가표준 선진화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됨
 - 1999년 2월에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표준제도 선진화의 기반 확보
 - 국가표준에 대한 종합조정체계와 정부의 책임, 표준의 여러 영역에 대한 기관별 기능분담 등이 포함됨
 - 기본법, 시행령 등의 내용은 WTO에 보고되었고 국제적으로 국가표준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음
- 국가표준에 대한 국내외적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측정표준의 확립과 보급에 대한 표준과학연구원의 역

할이 강조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측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측정분야별 기술력 향상이 요구됨

2. 국가표준기본법 및 기본계획(안) 추진경과

가. 국가표준기본법 관련법령 제정·시행

- 1980. 10. 27. 제5공화국 헌법 제 128 조 2항, 1987. 10. 29. 제6공화국 제 127 조 2항 「국가는 국가표준을 확립한다」라는 조항을 명문화
- 1999. 2. 8.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법률 제 5930 호)
- 1999. 7. 29. 동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 16494 호)
- 1999. 10. 7.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1999-109호) 및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110호) 등 시행
- 1999. 10. 13. 교정지정 운영세칙, 1999. 11. 12. 표준물질인증 운영세칙을 제정, 고시

나.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1999. 10. 23 ~ 12. 22. (2개월간) 산업자원부 정책과제로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분석연구 (책임자 : 이인원 박사)를 수행
- 2000. 2. 22. ~ 2. 25. 3박 4일로 과천 호프 호텔에서 합동작업 (표준원 2명 등 11명 참석) 계획(초안)을 수립 ⇒ 표준원 초안을 작성·제출
- 2000. 3월 중 표준원에서 계획(안)을 산자부에 수정 요청하였음 (3회)
- 2000. 4. 1. 각 부처 관계자 회의 시 참석하여 의견 개진
- 표준원의 입장을 제시, 산자부(안)의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회의를 추후 개최하기로 함.
- 2000. 4. 15. 산자부에서 국가표준심의회에 상정할 국가표준계획(안) 최종검토를 요청

- 2000. 4. 26.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표준기관, 업계, 학계, 적합성평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여 국가표준기본5개년계획(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 성문표준 중심의 발제 및 토론이 있었음.
- 2000. 5. 9. 서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표준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 : 산자부, 주관 : 교정협회) 개최
- 2000. 5. 28.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측정표준분야> 작성, 제출
- 2000. 5. 31.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산업발전과 국가표준 세미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최) 개최로 측정표준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2000. 6. 15. 국가표준기본계획 수정요구(안) 작성.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으나 약간만 수정되었음
- 2000. 6. 27. 1차 실무위원회 소집, 3개 분과위원장 선출 및 기본계획(안) 간이심의
- 2000. 9. 15. 과학기술한림원에서 김재관 박사님이 「국가표준제도의 확립-국가표준기본계획(안)」을 발표
- 2000. 11. 3.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및 서면 답변
- 2000. 11. 10. 국가표준심의회 상정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최종검토 요구
- 2000. 11. 15. 표준원 검토 의견 산자부에 송부
- 2000. 11. 22.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예정

3. 국가표준기본법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국가표준기본법 체계의 구조 및 특징

국가표준기본법 체계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운영요령 등이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령 체계의 구조

- 헌법 : 국회의원재적 2/3이상 및 국민투표 과반수로 제정 및 개정
- 법 및 법률 : 의원입법, 정부요청 등에 의해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
- 시행령 : 주무부처장관의 제의에 의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 및 개정 ⇒ 일반적으로 법 공고 3~6개월 후에 제정 · 시행
- 시행규칙 또는 운영요령 : 주무부처장관이 제정 및 개정
- 운영세칙 및 운용규정 : 주무부처장관 또는 소속부서장이 제정 및 개정

(2) 법령체계의 일반적인 원칙

-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법률간 상충될 경우 모법 또는 관련성이 많은 법을 우선 적용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의 특징

- 국가표준기본법은 관련분야의 포괄적 법률의 성격을 가지며 측정표준관련사항을 내포하고 있음 ⇒ 「국가표준 및 측정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적합할 수도 있음
- 각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인정하는 분산조정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등으로 위임하고 있어 전문적인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는 한편 국가표준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는 종합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나. 현황 및 문제점

국가표준기본법은 비교적 잘 구성된 법률이지만 시행령과 운영요령 등 하부구조를 정비하면서 다소 입법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관점에서 미흡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1) 상하법령체계 상의 조화가 부족하다

-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은 잘 제정되었음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다시 재위임되는 모순이 있음
- 중요한 실행사항의 대부분이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요령에서 다루어지게 됨

(2) 국가표준기본법 ⇒ 동 시행령 ⇒ 관련요령 및 시행규칙 ⇒ 관련세칙 및 규정 등으로 내려가면서 주관기관간의 역할분담 체제가 왜곡되었음

- ① 선진 국가표준제도학립이라는 헌법정신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 되었음
- ② 산업자원부 중심의 집중형 업무분장은 전문기관 중심의 다원적 네트워크에 의한 민 간중심적이고 분산조정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다소 역행됨

(3) 과학기술중심적 역할분담이 아닌 행정논리중심적 임무수행 체제가 고착될 위기 에 있음

- ①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전문기관이나 과학기술자들을 좌지우지하는 모순이 발생 됨
- ② 「일하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지시하고 관리하는 기관 따로」라는 모순이 파생됨
⇒ 법 제 31 조 (권한의 위임 · 위탁)에서는 산자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의하여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와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요령 등의 개정,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국제 협력 및 교류에 혼선이 야기되고 국가 신임도에도 영향을 미침

- ① 표준관련 국제기구와 선진표준기관과의 관계에서 표준원과 기술표준원이 이중으로
접촉함에 따라 혼선이 가중됨
- ② 국제적 관례와 민간주도형으로 이관되는 추세에 역행하므로 표준을 중심으로 한 국
가신임도가 떨어지게 됨

4. 국가표준관련 법령 및 체계의 개선방안

가. 시행령 개정 방안

(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골자

제 12 조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 14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은 이를 국가교정업무총괄전담기관 (이하 “국가교정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국가교정시행기관 (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 1 항의 국가교정전담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하며,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 1) 국가교정기관 지정, 평가 및 사후관리
- 2) 국가교정기관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 3)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③ 제 1 항의 국가교정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이 유지될 것
- 3)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 할 것
- 4) 기타 품질관리시스템 및 기술적인 요건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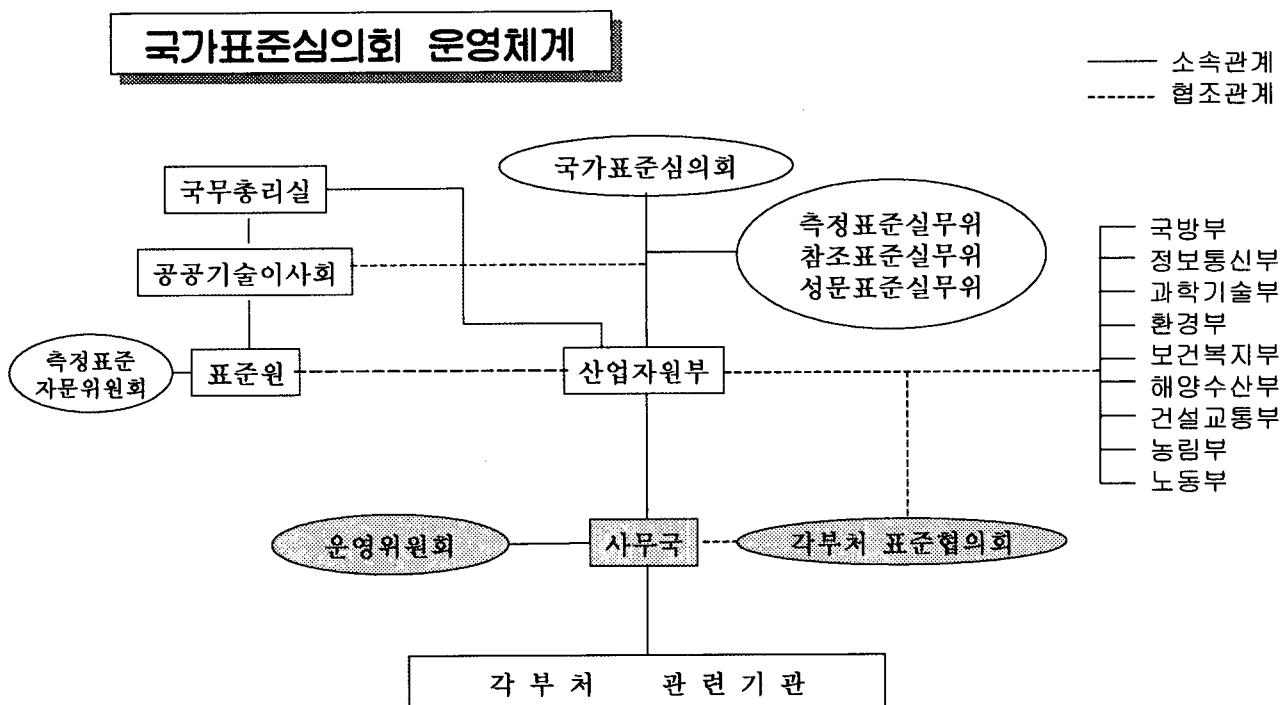
④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기타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정전담기관이 정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⑤ 제 3 항의 기준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교정기관은 그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바람직한 국가표준 역할분담 체계

(1) 국가표준심의회 (기본법 제5조, 6조)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측정표준대표기관의 장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측정표준, 성문표준, 참조표준의 3개 실무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산자부장관이 간사임
- 국가표준에 대한 예산, 인력 등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



(2) 표준원 (기본법 제13조, 14조, 15조, 16조, 19조)

- 표준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함
 - 국가측정표준원기의 유지 관리
 - 표준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 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회의 업무수행 지원
 - 국내외적 소급성 유지를 위한 국가교정제도의 운영
 - 표준물질 인증 보급체계의 운영

- 참조표준 체계의 확립 및 운영

(3) 기술표준원 (기본법 제17, 18, 22, 23, 24조)

○ 기술원(기술표준원)은 성문표준 및 법정계량의 주관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담당함

- 법정계량제도의 운영
- 성문표준제도의 운영
- 시험검사기관 인정체계의 확립 운영
- 품질 및 제품 인증체계의 확립 운영

기본법 체계하에서 기관간 기능의 분담

구 분	업무내용	관련기관
정책결정	-국가표준에 대한 제반 시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관련 부처간의 조정사항	국무총리조정실, 산자부, 관련 중앙행정기관(표준원 지원)
체계운영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 -국가표준심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국가표준 실적보고 -자료발간, 정보제공	산자부, 표준원 지원 측정/참조표준은 표준원 성문표준은 기술원 산자부 (표준원 지원) 표준원/기술원 공동협의체 구성 중앙행정기관, 산자부 교정협회 (표준원 지원)
측정표준	-국가측정표준의 대표 역할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표준물질의 개발, 인증, 보급	표준원
참조표준	-참조표준의 제정 보급	표준원
성문표준	-산업표준 제정 보급	기술원
법정계량	-법정계량 제도 확립	기술원 (표준원 지원)
인정/인증	-교정기관 인정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 -시험검사기관 인정 -품질, 환경시스템 인증	표준원 표준원 기술원 (표준원 지원) 기술원
표준인력 양성	-측정표준 인력양성 -계량 관련 인력양성 -성문표준 인력양성	표준원 교정협회 표준협회

(4) 현행 국가표준기본법 소관 업무 현황

기본법 조항	기본법	시 행령	관련요령 및 세칙	주관기관	표준원 역할	표준원 권한 및 책임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 구성 및 운영	제2조, 3조, 4조, 5조	-	산자부부장관	국가측정대표기관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	준 중앙부처장관의 권한
제6조	심의회의 결사항적 극추진 • 세부 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제2조, 3조, 4조, 5조	-	중앙부처의장, 지방자치단체장	계획체인 및 실적보고	준 중앙부처권한 및 준의무조항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8개 내용 등	제6조, 7조	-	산자부부장관	"	"
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7조	-	"	"	"
제13조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임무, 대표기관, 측정표준자문위)	제11조	-	표준원	주관기관	임의적 권한 및 임무 - 측정표준체계 및 비교의무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 •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제12조	교정기관지정 체도운영요령	산자부부장관 (기술표준원장)	하나의 국가교정기관으로 서의 역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유지 의무 - 권한과 책임이 없음
제15조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3조	CRM요령	"	없음	없음
제16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4조	제정예정	"	참조표준수집, 분석, 평가 수행	시행령에서 표준원에 위임한 임무
제17조	법정계량	별도	별도	산자부부장관 (기술표준원장)	없음	없음
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별도	별도	"	없음	없음
제19조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15조	-	"	없음	(사) 행정事业单位 외 업체지 않았음)

기본법 조항	기본법	시행령	관련요령 및 세칙	주관기관	표준원 역할	표준원 권한 및 책임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자료, 자원, 규정 등 제출	-	없음	산자부장관	협조	산자부장관 요청시 춘 중앙청 정부처장으로서의 책임
제21조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 2항 4호 교정기관의 인정	-	없음	"	없음	없음
제25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제16조	시험·검사기관 인정운용규정	산자부장관 (기술표준원)	"	"
제27조	출연금의 지원 등 • 1~11호의 지원대상업무 등 열거	제17조	없음	중앙행정부처의 장	출연금 사용	목적에 사용 의무
제29조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없음	산자부장관	주요기관 중 하나의 기관	인력양성임무
제30조	국가표준담당공무원의 인사관리	-	없음	"	없음	없음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 산자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부처, 출연(연), 표준원, 기관이나 협회에 위탁가능	-	없음	"	"	"
	- 고정방법의 개발	-	제5조	기술표준원장	필수적 협력자	협조사항
	- 교정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	제9조	"	위원회 활동 참가	"
	- 교정기관지정 평가사	-	제15~18조	"	평가사 활동 참가	"
	- 축정심사(교정기관 최초 신청시)	-	제24조	"	축정심사 수행	협조사항, 결과보고는 준 의무
	- 비교숙련도 시험	-	제25조	"	필수적 협력자	협조사항

다. 관련 법령 개정의 방법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와 관련된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요령」 등이 개정되겠지만,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므로 1~2년이 소요됨 ⇒ 따라서 2가지 방법론이 대두됨

- ① 방법1 : 1차적으로 관련 요령 및 세칙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
- ② 방법2 : 관련 요령 및 세칙만은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것이 예상되므로 시행령 개정 및 관련 요령 개정을 함께 추진
 - 시행령에 의해서만 산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과 함께, 바람직한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임

라. 현황 및 향후 과제

- 국가표준기본법은 헌법정신과 선진국가표준제도확립을 위해 제정된 바람직한 법률임
- 그러나 시행령, 요령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법정신이 퇴색되고, 기능 및 역할 분담이 산자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왜곡되었음
- 현행 행정논리 중심의 과대한 업무집중은 산업고도화에 따른 다양성 및 고도화된 전문성에 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관련 법령체계를 개정하여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과 표준행정부처인 산업자원부간의 바람직한 역할 및 기능의 분담체계 구축, 선진국 및 국제관례와 부합되는 표준제도 확립을 이룩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김재관(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0
2. 우리나라 국가표준체계 현황과 선진화 방안, 김동진(STEPI 세미나), 2000
3. 신교역규범에 적합한 국가표준체계 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999
4. 국가표준기본계획(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0
5. 산업발전과 국가표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관 세미나, 2000. 5.
6. 국가표준관련 법률체계의 개선 방안, 이경희(동서경제학회세미나), 2000. 10.